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보충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옮겨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규정하고,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등을 마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신상 변동 사항 미통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 기준 정비(안 제68조의11)

일부 대회의 경우 한국인의 수상비율이 높아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이 낮고, 편입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개최 일부 국제대회도 연도별 편입인원 등을 고려 국내대회 기준으로 편입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 기관 지정 및 분기별 공익복무 시간 마련(안 제68조의12)

예술·체육요원의 공익복무 대상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으로 한정하고, 분기별 공익복무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정함.

다. 복무기본교육·직무교육 대리참석자 등 경고처분(안 제16조의18)

예술·체육요원이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등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이나 조퇴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경고처분하도록 함.

라. 편입취소자 특기활용 공익복무 미이행시간 복무기간 미산입 및 부정 편입 취소자 복무기간 산정방식 개선 등(안 제68조의19 및 안 제92조)

1) 예술·체육요원 편입취소자 복무한 일수의 계산은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16시간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

2) 예술·체육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 후 취소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만 복무기간으로 인정

마.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운영기준 마련(안 제68조의20 신설)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복무기본·직무교육 횟수, 통지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함.

바. 예술·체육요원“특기활용 봉사활동”을“공익복무”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제68조의14, 제68조의15, 제68조의17 등)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
에 조문별 용어를 정비함.

사.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부여 및 취득 후 전직 규정 등 마련

-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3년) 신청절차 등
마련
- 2) 박사학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병역지정업체(대기업연구
기관과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제외) 옮겨 복무, 부득이한 경
우 대기기간 3개월 연장
- 3) 박사학위 취득 후 전직 대기기간은 복무기간으로 미인정
- 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시간 관리를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전
환하기 위해 무단결근 산정기준을 병무청장에게 위임

아. 승선근무예비역 등 소관부처 운영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 규정(안 제
40조의9 및 안 제93조)

소관부처에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를 필요인원 추천 시 반영하도록 함.

자. 보충역이 현역복무 희망 시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 (안 제135조의2)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소집대상자)이 현역복무 희망 시 현
역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함.

차. 대중문화예술인 신상변동 사항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71조 별표4)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및 계약종료 사항을
통보(14일 이내) 하도록 하고, 미통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카.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근거 명확화(안 제13조 및 제18조의5)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의뢰 대상자에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타.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에 임기제부사관 선발자 포함(안 제18조의7)

특성화고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1월경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해 2월에 입영하여, 또다시 입영판정검
사를 실시할 실익이 적으므로,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파. 사회복지무요원 별도소집대상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52조)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회복지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별도소집대
상자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하. 사회복지무요원 청원휴가 범위 확대 및 연가가산 기준 정비(안 제59조)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사회복지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간 연가를 받은 사람과 단기간 여러 차례 받은 사람간 형평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가가산 기준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서

‘통틀어 2일 이하를 받은 경우’로 개선함.

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기준 개선(안 제62조)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입영자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할 남은 복무기간 계산식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 편입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단축된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실태확인 및 취소 근거 등 마련(안 제65조)

지방병무청장은 분할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여 분할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분할복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복무자의 해당 질병에 대한 지속적 진료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 의사 등 편입절차 개선(안 제69조, 안 제118조 및 안 제119조)

의무장교를 지원할 때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으면 공보의를 지원한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장교를 지원한 사람이 의무사관후보생도 지원한 경우에는 의무장교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졸업생의 경우 의무장교 지원 시 학교를 거치지 않고 병무청에 직

접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함.

라.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업체규모 추가(안 제91조)

병역지정업체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규모(중소, 중견 등) 변경 사항’을 병역지정업체 신상변동 통보 사유에 추가함.

마.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미실시자 근거조항 오류 정비(안 제107조)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문 오류를 바로잡음.

바.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신분포기 시기 제한(안 제120조)

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보생 신분을 포기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 훈령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생의 신분 포기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시행령 규정과 상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함.

샤. 국내에서 외국대학 원격수업자도 학업보장 근거 마련(안 제124조, 안 제125조, 안 제127조)

국내 체류하면서 외국 교육기관 재학자(원격수업 포함)에게 국내 대학(원) 연기연령과 동일한 수준의 징집 또는 소집연기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의 범위 및 연기절차 등을 마련함.

야.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 폐지(안 제129조의2)

취업사유 연기 시 학력요건을 폐지, 대학중퇴·제적한 사람도 연기대상

에 포함.

자.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한 사람도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안 제130조)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경비교도 복무자도 전·공상 사유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

차.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처분할 수 있는 대상 추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등 중증 질환자를 추가함.

카.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변경원 직접 제출 근거 마련(안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등이 질병 등 심신장애로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자 추가(안 제136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외 직무태만, 근무기강 문란 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복무에 부적응한 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대상에 추가함

파.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안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근거를 마련함.

하. 병역면탈 의심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안 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

거. 입영판정검사 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안 제157조)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에 입영판정검사를 추가함.

너. 대체복무요원 고발권자 변경(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대체복무기관의 장)(안 제165조)

대체복무요원을 복무관리하고, 경고 등 복무 위반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 및 고발하도록 함.

더.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 개선(안 제166조)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임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기관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역면탈 조장사이트 신고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의5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8조의7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

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40조의9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에 대한 추천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필요인원을 추천할 때 반영해야 한다.

제52조제7호 중 “제137조제4항”을 “제137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1회”를 각각 “통틀어 2일 이하로”로 한다.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 제30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된 퇴교 전 교육기간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제92조제3항 본문, 제92조의2 또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2. 법 제23조의4제1항, 제33조의10제4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제35조의3제2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4.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복무실태를 확인하여 분할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실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여부 등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충족하는 사람.”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 및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의1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8제5항”을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로,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을 “공익복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의”를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을 “공익복무의 실적을 공익복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공익복무 실적”으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을 “공익복무의 세부적”으로 한다.

① 예술·체육요원은 법 제33조의8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

라 의무복무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총 544시간 동안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공익복무 시간으로 한다.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에 따른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은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이상의 공익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시간 또는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

무 시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제68조의14제1항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68조의15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한다.

제68조의1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각각 “공익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로, “봉사활동 실시”를 “공익복무 실시”로 한다.

제68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를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제68조의19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를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8시간 이상은 1개월 복무한 것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하여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16시간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항제4호

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2에 제68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0(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1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⑤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9조제2항”을 “제118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9조제2항”으로, “의무·법무”를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법무”로 한다.

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한 유예기간 승인 여부 및 그 범위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6호”를 “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는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자연계박사 학위과정에 복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제5호(자연계대학원은 제외한다)·제6호 및 제7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89조제2항제7호 중 “초과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제8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 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법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기기간 전부를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89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7호 중 “명칭 또는 업종”을 “명칭, 업종 또는 규모”로, “규모 및 연구분야”를 “연구분야”로 한다.

제9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무단결근(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

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무단결근을 말한다) 산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9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및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소관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에 대한 추천 기준
2. 소관 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과 필요인원을 추천할 때 반

영하도록 해야 한다.

제107조제1호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단서 중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제1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18조 본문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0조제1항제9호 중 “본인”을 “병무청장이 정하는 시기까지 본인”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학, 산업대학”을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 2년의 학교교육 또는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산업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예술종합학교를”을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을”로 한다.

제1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연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7조제2항 중 “학적변동통보”를 “학적변동통보 및 외국 대학(원)의 수업여부”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제134조제1항제7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직접 제출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제5호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 소집을 해제한다.

제135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충역”을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로, “병역처분 불변경”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현역”을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력이”를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4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제136조제2항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55조의2제5항 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로 한다.

제157조제2항 중 “징집”을 “입영판정검사, 징집”으로 한다.

제165조제4항 본문 중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의 장(이하 “대체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소관중앙행정기관”을 각각 “대체복무기관”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으로, “사실을”을 “사실이나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내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5 조제2항	30	60	1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퇴교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및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 ③ (생략) ④ 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13조(병역판정검사의 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u>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에</u>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 ② · ③ (생략)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 ----- ----- -----. <u>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 ----- -----

에서 제외된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신설>

<신설>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

-----.

1. (현행과 같음)

1의2.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
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병역법 시행령」 제29
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체검
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
과하지 않은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에 대
한 추천 기준

2.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 운
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필요인원
을 추천할 때 반영해야 한다.

③·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제137조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 9. (생략)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

⑥ ----- 제4항-

-----.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⑧ 제7항-----

-----.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7조제7항-----

8. · 9. (현행과 같음)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2. 청원휴가

가. ~ 바. (생략)

<신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
산한 경우: 3일

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연간 10일

1) 「영유아보육법」에 따
른 어린이집, 「유아교육
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
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
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
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

<신 설>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1회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 각 호

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
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
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
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
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
행하는 경우

자.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일 최대 2시간의 육
아시간. 이 경우 육아시간
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
무청장이 정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통틀어 2일
이하로 -----

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병가를 1회 받은 경우: 2일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
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137조제7항
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
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
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
준 기간에 합산한다.

1. ~ 4.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 통틀어 2일 이하로 ----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

----- <단서 삭제>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 제30조제7항
제1호나목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된 퇴교 전 교육기간이나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에서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6

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제92조제3항 본문, 제92조의2 또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2. 법 제23조의4제1항, 제33조의10제4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제35조의3제2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승선 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4. 대체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

② · ③ (생략)

④ 복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3항의 복제 기준에 따른 제복 · 이름표 · 모자 등을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⑤ 병무청장이나 복무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 ③ (생략)

<신설>

람 중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 제4항-----

-----.

⑥ -----

----- 제1항 · 제3항 및
제5항-----

-----.

제65조(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복무실태를 확인하여 분할복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신 설>

④ ~ ⑥ (생 략)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서 신설>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분할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실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여부 등을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 -----

----.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회에서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단서 신설>

가. (생략)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평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

-----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 및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평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

----- 한정한다.

2. -----

----- . <단서 삭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68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신설>

① 법 제33조의8제5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이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2(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① 예술·체육요원은 법 제33조의8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총 544시간 동안 공익적인 업무에 복무(이하 “공익복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92조의2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공익복무 시간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
공익복무 -----

-----.

1. ~ 3.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의8제6항제2호에 따른 공익복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 그 밖에 예술·체육요원의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④ 법 제33조의8제6항제3호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 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 예술·체육요원은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이상의 공익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시간 또는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삭 제>

⑥ -----
----- 공익복무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개인별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세부적인 이행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8조의14(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과 보충역 복무기록표,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및 병역증을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③ (생략)

제68조의15(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준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

⑦ -----
----- 공익복무
의 실적을 공익복무를 -----

-----.

⑧ 공익복무 실적-----
----- 공익복무
의 세부적-----

-----.

제68조의14(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① -----

----- 공익복무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5(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

----- 공익복무 -----

· 체육요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68조의17(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에 기재·정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적부: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봉사활동 실시와 관련된 사항

③·④ (생략)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8조의17(예술·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

----- 공익복무 -----
-----.

② -----
----- 공익복무 -----

-----.

1. (현행과 같음)

2. 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
----- 공
익복무 실시-----

③·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의18(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10제2항제8호

-----.

1. · 2. 삭 제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
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
· 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 · 조퇴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
· 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예술 · 체육요
원의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
에는 예술 · 체육요원으로 복무
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
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8
시간 이상은 1개월 복무한 것으
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
입하지 않는다)하여 미달한 경
우에는 미달한 16시간마다 1개
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
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예술 ·
체육요원이 법 제33조의10제4
항제4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이나

⑤ 법 제33조의10제4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제4항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

-----.

제68조의20(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법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7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최초의 복무기본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우편송달

3.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전자송달(미리 교육 대상자에게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⑤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고,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의무·법무 또는 수의사관후보생 편입지원서에 의무분야·법무분야 또는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병역판

[illegible]

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③ ~ ⑧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8조의4(전문연구요원의 박사

학위 취득 유예기간) ① 법 제3
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
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
람(이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
원”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4
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받으
려는 경우에는 해당 병역지정업
체의 장에게 유예기간 부여 신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
신청서를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전문연구요원
이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의
무복무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승인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
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
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
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
한다)에 옮겨 복무해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
정한 유예기간 승인 여부 및 그
범위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유예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의 전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
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동일 법인 내의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로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갈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

② 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는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자연계박사학위과정에 복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제5호(자연계대학원은 제외한다)·제6호 및 제7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

⑤ ----- 제4항 -----

[illegible]

⑥

제5항

⑦ _____

요원이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
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
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
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⑦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6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
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제7항에 따라 전직승인 신
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

----- 제3항-----

-----, ----- 제3항제6
호 -----

-----.

⑧ ----- 제7항

⑨ ----- 제7항

-- 제8항-----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

-----.

⑩ 제3항-----

-----.

제89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제85조제2
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경
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
간 <단서 신설>

8. (생략)

9.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병
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

-----.

1. ~ 6. (현행과 같음)

7. -----

----- 초과하는 기
간.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
요원이 제8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다
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
우 또는 법 제37조제4항에 따
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법 제85
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른 병
역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
는 대기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8. (현행과 같음)

<삭제>

제91조(신상변동 통보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light gray. There are no margins or additional markings present.

1. ~ 6. (현행과 같음)
7. ----- 명칭, 업종
또는 규모----- 연구
분야-----

8.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무단결근(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무단결근을 말한다) 산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신 설>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의 평가방법·평가기준, 우수복무기관이나 우수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복무기관,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합해야 한다.

1. 소관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에 대한 추천 기준

2. 소관 분야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지침

3. 그 밖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과 필요인원을 추천할 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3항-----

중인 연구소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업체나 연구소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파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복무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

-----.

⑦ -----

----- 제3항 -----

-----.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제8항 -----

-----.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

-----.

1. -----

-----.

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의2. 삭 제

1의3.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 4. (생략)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

----- 제137조제7

항-----

-----.

1의3. -----

-----.

----- 제1

37조제1항제6호-----

-----.

2. ~ 4.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① -----

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② (생략)

<신 설>

③ (생략)

----- 제출해야 -----. 이 경우 의무·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연수기관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직접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18조 본문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및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

⑤ ----- 제4항-----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 제7항-----

-----.

제120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

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본인이 법무·군종·수의사
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10. (생략)

② · ③ (생략)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
(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
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
다)을 연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9. 병무청장이 정하는 시기까지
본인-----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 . 이 경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나라 대
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및 같은 조 제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나. ~ 라. (생략)

3.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

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대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 2년의 학교교육 또는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한다), 산업대학-----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 한국예

<u>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u> 4. (생 략)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생 략)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u>학적변 동통보</u>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 인할 수 있다.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u>초 · 중등교육법</u>」 제2조제3호에	<u>술종합학교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원과정에 상응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 국 대학을 ---</u> 4. (현행과 같음)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외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 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4조제1 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 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 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야 하고, 이 경우 연기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u>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적변 동통보 및 외국 대학(원)의 수 업여부</u>-----. 제129조의2(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① ----- <u>국가 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u>
--	---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
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
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으
며, 그 기간은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
업소 등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이
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복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세
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겐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which are commonly used to guide letter height and placement for children learning to writ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providing a structured environment for practicing various writing skills.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세
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
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 6. (생략)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寛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

1. ~ 3. (현행과 같음)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대체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전시근로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료로 치료한 경우에 한정하
다)-----

[illegible]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제출해야 -----

-----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자에게 직접 제
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직접 제출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질병
의 정도, 신청 횟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⑤·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
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47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 및 국외여행허
가를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⑧ (생 략)

⑨ 지방병무청장이 제3항에 따
라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역처분
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생 략)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

1.·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제4항-----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후단 신설>

1.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3.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또는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

-----이 경우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제5호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
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한
다.

1. -----

-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변경
2. -----

- 신체등급 1급부
터 4급까지 -----

3. 전시근로역 -----

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u>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지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u> 5. <u>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4항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u> 6. (생략) ③·④ (생략)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생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 ----- ----- ----- 4. <u>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u> -- ----- ----- ----- ----- ----- ----- 5. <u>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다만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4항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u>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 ⑦ (생략)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 제1항,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 ④ (생 략)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의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및 전역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6. 본인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2(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입영판정검사, 징집-----

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 ③ (생 략)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

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의 장(이하 “대체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 --- 대체복무기관-----
-----.

⑤ 대체복무기관-----

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 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u>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u>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 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u>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 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 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 과 단속 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 한 기관 및 공무원과 위법·부 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생략)	----- -----. -- <u>대체복무기관</u>----- ----- -----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 ----- ----- ----- ---- <u>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 한 사람</u>----- ----- ----- ----- ----- <u>사실이나 병역 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인터넷 불건전 정보를</u>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8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77